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97
----------	------

2013년 7월 5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년 6월 14일, 이창섭 의원 외 10명
- 나. 회부일자 : 2013년 6월 18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3년 7월 5일 상정·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이창섭 의원)

### 가. 제안이유

-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저감사업인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보완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함(안 제2조제2호, 제3호, 제6호)
-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안석수)

### 가.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용어의 정비(안 제2조제3호, 제4호, 제6호)

- 온실가스, 온실가스의 배출 등 관련 법<sup>1)</sup>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조례에 반영하고,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별도 문제 없음.

#### 2)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조례에 규정하고 참여 시민,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 에코마일리지란 에코(eco, 친환경)와 마일리지(mileage, 쌓는다)의 합성어로 친환경을 쌓는다는 의미이며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가입자의 에너지사용량을 6개월 주기로 체크하여 에너지 절감을 실천한 회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지난 2009년 9월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2013년

---

1) 본 조례는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2008년에 서울시에서 만든 것으로 조례 시행이후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임

6월 19일 현재 회원수는 개인 835,586명, 단체는 32,815개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환경부에서도 같은 개념의 탄소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표 2 에코마일리지 제도와 탄소포인트 제도의 비교

구분	에코마일리지 제도	탄소포인트 제도
가입대상	서울시민	전국민(서울시민 제외)
프로그램 개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온실가스 감축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온실가스 감축 시민참여 프로그램
인센티브 내용	6개월간 전기, 수도, 가스 합산 사용량을 과거 2년 대비 10%이상 감축시 연간 최대 10만점 적립	6개월간 전기, 수도, 가스 개별 사용량을 참여당시 과거 2년 대비 10% 이상 감축 시 연간 최대 7만점 적립
가입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또는 지자체(시청, 구청, 주민센터) 방문신청	
홈페이지	<a href="http://www.ecomileage.seoul.go.kr">www.ecomileage.seoul.go.kr</a>	<a href="http://www.cpoint.or.kr">www.cpoint.or.kr</a>

-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된 에코마일리지에 대하여 이를 조례에 규정하고 참여하는 시민,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참고법령

### □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생략)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sub>2</sub>), 메탄(CH<sub>4</sub>), 아산화질소(N<sub>2</sub>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sub>6</sub>)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 5.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 : 에코마일리지와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
- 답변 :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나, 환경부에서는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음.

## 6. 토론요지 : 없음

## 7.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 8. 수정안 요지

-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

## 9.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10.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97
----------	------------

제안년월일 : 2013년 7월 5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 1. 수정이유

-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용어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

## 2. 주요 골자

- "에코마일리지 제도"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절약한데 대해 마일리지 방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함.  
(안 제2조제6호)

## 3. 참고사항: 생략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6호 중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주는”을 “절약한데 대해 마일리지 방식의 인센티브를 주는”으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다음의 물질을 말한다.</p> <p>가. 이산화탄소(CO<sub>2</sub>)</p> <p>나. 메탄(CH<sub>4</sub>)</p> <p>다. 아산화질소(N<sub>2</sub>O)</p> <p>라. 수소불화탄소(HFCs)</p> <p>마. 과불화탄소(PFCs)</p> <p>바. 육불화황(SF<sub>6</sub>)</p> <p>3. “온실가스의 배출”이란 사람의 경제·사회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중으로 방출 또는 누출하는 것을 말한다.</p> <p>4. ~ 5.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제2조(정의) ----- ----- -----.</p> <p>1. (현행과 같음)</p> <p>2.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sub>2</sub>), 메탄(CH<sub>4</sub>), 아산화질소(N<sub>2</sub>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sub>6</sub>) 및 그 밖에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p> <p>3.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p> <p>4. ~ 5. (현행과 같음)</p> <p>6. “에코마일리지 제도”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p>	<p>제2조(정의) ----- ----- -----.</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3. (개정안과 같음)</p> <p>4. ~ 5. (개정안과 같음)</p> <p>6. “에코마일리지 제도”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절약한데 대해 마일리지 방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p>

<p>&lt;신설&gt;</p>	<p><u>프로그램을 말한다.</u></p> <p><u>제25조의2(에코마일리지 제도)</u></p> <p>① 시장은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p>	<p><u>프로그램을 말한다.</u></p> <p><u>제25조의2(에코마일리지 제도)</u></p> <p>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	-----------------------------------------------------------------------------------------------------------------------------------------------------------------------------------	------------------------------------------------------------------------------------------------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sub>2</sub>), 메탄(CH<sub>4</sub>), 아산화질소(N<sub>2</sub>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sub>6</sub>) 및 그 밖에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6. "에코마일리지 제도"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절약한데 대해 마일리지 방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에코마일리지 제도) ① 시장은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다음의 물질을 말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가. 이산화탄소(CO<sub>2</sub>)</p> <p style="margin-left: 20px;">나. 메탄(CH<sub>4</sub>)</p> <p style="margin-left: 20px;">다. 아산화질소(N<sub>2</sub>O)</p> <p style="margin-left: 20px;">라. 수소불화탄소(HFCs)</p> <p style="margin-left: 20px;">마. 과불화탄소(PFCs)</p> <p style="margin-left: 20px;">바. 육불화황(SF<sub>6</sub>)</p> <p>3. “온실가스의 배출”이란 사람의 경제·사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 또는 누출하는 것을 말한다.</p> <p>4. ~ 5.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lt;신설&gt;</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lt;신설&gt;</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sub>2</sub>), 메탄(CH<sub>4</sub>), 아산화질소(N<sub>2</sub>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sub>6</sub>) 및 그 밖에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p> <p>3.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p> <p>4. ~ 5. (현행과 같음)</p> <p>6. “에코마일리지 제도”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절약한데 대해 마일리지 방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p> <p>제25조의2(에코마일리지 제도) ① 시장은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p>